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3년 연장〉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4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의 검토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의 일몰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 호의 개정규정¹⁾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 -----2027년 12월 31일--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안의 검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²⁾ 다음 표와 같이 각종 지방세 세목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형태의 특별시·광역시·도세임.

1)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2)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분	“표준세율-2%p”로 산출한 취득세액(舊등록세분) × 20%
등록면허세분	등록면허세액 × 20%
레저세분	레저세액 ×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 × 43.99%
주민세분	주민세액 × 2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
재산세분	재산세액 ×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 × 30%

주) 레저세분을 제외한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50% 가감 조정 가능(탄력세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1996년 지방세분 교육세로 신설되어 2000년말까지 담배소비세액의 40%로 부과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2001년 지방세분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일몰기한이 2003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05년말까지 2년, 2010년말까지 5년, 2015년말까지 5년 연장되었음. 또한 2016년에는 세율이 43.99%로 인하되며 일몰기한이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21년말까지 3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연혁]

구분	시행일	과세표준 및 세율	일몰기한
교육세 (지방세분)	1996.1.1.	담배소비세액 × 40%	5년(∼2000년말)
지방교육세	2001.1.1.	담배소비세액 × 50% ※ 지방재정 보강 등을 위한 인상	3년(∼2003년말)
	2004.1.1.		2년(∼2005년말)
	2006.1.1.		5년(∼2010년말)
	2011.1.1.		5년(∼2015년말)
	2015.1.1.	담배소비세액 × 43.99% ※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인하	3년(∼2018년말)
	2016.1.1.		3년(∼2021년말)
	2019.1.1.		3년(∼2024년말)
	2022.1.1.		3년(∼2024년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은 상기 일몰기한을 다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시·도 등 간에 다음과 같은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³⁾에서 ① 최근 국세 수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예산 대비 2023년 10.4조원, 2024년 4.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②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비용 분담 규정⁴⁾이 2024년말 기준 일몰되어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⁵⁾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 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7년 이후 일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3) 지방교육세는 시·도에서 징수한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액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출되어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5) 다만, 동 일몰기한을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11월 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2024~2033년 초·중·고 학령인구 전망]

(단위: 천명)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초등학교 (6~11세)	2,485	2,344	2,203	2,036	1,866	1,725	1,607	1,504	1,428	1,383
중학교 (12~14세)	1,384	1,403	1,357	1,328	1,296	1,248	1,154	1,046	955	881
고등학교 (15~17세)	1,379	1,367	1,362	1,382	1,400	1,355	1,326	1,294	1,246	1,153
합계	5,248	5,114	4,922	4,746	4,562	4,328	4,087	3,844	3,629	3,417

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

반면, 시·도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⁶⁾에서 ① 학령인구 감소는 2027년이 아니라 이미 2000년대 후반 본격화되어 2024년 학령인구(524.8만명)가 2005년 792.3만명 대비 33.8%,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이 신설된 1996년 862.4만명 대비 39.1% 각각 감소되어 있고,

[1996~2024년 초·중·고 학령인구 추이]

(단위: 천명)

구분	1996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학교 (6~11세)	3,822	4,073	4,018	3,280	2,720	2,724	2,720	2,701	2,607	2,485
중학교 (12~14세)	2,343	1,869	2,064	1,985	1,578	1,364	1,380	1,368	1,364	1,384
고등학교 (15~17세)	2,459	2,166	1,841	2,084	1,868	1,390	1,344	1,323	1,364	1,379
합계	8,624	8,108	7,923	7,349	6,166	5,478	5,444	5,392	5,335	5,248

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

② 1996년 이후 29년간 이미 일몰기한이 7차례 연장되며 관성화되어 일몰기한을 설정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원칙대로 2024년말 일몰기한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6)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이 일몰되면 해당 금액(담배소비세액 × 43.99%)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정부는 관계 부처간 이견⁷⁾을 절충하여 동 일몰기한을 2026년말까지 2년 연장⁸⁾하는 「의안번호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⁹⁾

문 의 처
02)6788-5333

7)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짐.

8) 이후 2027년 일몰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함.

9)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한 정부 합의(차관회의 기준 10월 31일) 이후 전술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등 분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11월 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